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,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「해상교통안전법」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「해상교통안전법」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(안 제29조)

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,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「해상교통안전법」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 등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0. 2. ~ 11. 13.) 예정

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탁한다”를 각각 “위탁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13조제6항, 제13조제8항, 제16조제6항, 제17조제2항, 제17조제7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등에 관한 업무

2. 법 제59조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

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업무의 위탁) ① 해양수산 부 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 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 에 관한 업무를 「한국해양수산 연수원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수 산연수원(이하 “한국해양수산 연수원”이라 한다) 또는 정부대 행기관에 <u>위탁한다</u> .	제29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탁할 수 있다</u> .
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109 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 양수산연수원에 <u>위탁한다</u> 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탁할 수 있다</u> 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109 조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, 주소, 위 탁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<u>고시해야 한다</u> .	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109 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<u>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</u> 에 <u>위탁할 수 있다</u> . 1. 법 제13조제6항, 제13조제8 항, 제16조제6항, 제17조제2 항, 제17조제7항에 따른 해상 교통안전진단서 검토 등에 관 한 업무 2. 법 제59조에 따른 해상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

<u><신 설></u>	<u>업무</u> ④ <u>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51) 773 - 5820